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4. 21.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4.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회의(97.5.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폐지(95.12.30.)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함

나. 주요골자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안 제2조)

(※ 연면적 1만m^2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심의(안 제3조제2항)

－ 건축위원회

○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안 제4조)

○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안 제5조)

－ 건축주와 작가간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 금액으로 함.

－ 미술장식품 가격을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

○ 미술장식품의 설치 및 건축비용의 비율(안 제6조)

영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 숙박, 판매, 위락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 100분의 1

－ 공동주택 ····· 1,000분의 1 이상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건축물은 의무사항입니까?	○ 안 제3조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의무사항이고 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건축물은 권장사항입니다.
○ 타당성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 부천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 건축물은 100분의 1이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 영 제25조의 규정에는 100분의 1 이하도 있는데 최대치로 잡은 수치입니까?	○ 100분의 1은 최대치로 잡은 것입니다.
○ 부천시건축위원회에서 조례규정 사항을 심의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 호텔, 백화점, 대형빌딩 등입니다.
○ 안 제5조제1항 중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을 미술장식품 사실상의 금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 사실상의 금액으로 수정하게 되면 혼란이 예상되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안 제5조제1항 중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을 "미술장식품 사실상의 금액"으로 수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의결년월일	97. 5. 7. (제53회)

제출년월일 : 1997. 4.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폐지(95.12.30.)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함

2. 주요골자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안 제2조)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심의(안 제3조 제2항)

- 건축위원회

○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안 제4조)

○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안 제5조)

- 건축주와 작가간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 금액으로 함

- 미술장식품 가격을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

○ 미술장식품의 설치 및 건축비용의 비율(안 제6조)

- 영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 숙박, 판매, 위락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100분의 1

• 공동주택 1,000분의 1이상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 3 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 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가격을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분의 1
2. 공동주택(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건축개요	위치					
	건축주	성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예정일		총공사비	
건축 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진화	
미술품 개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 . .

신청인: 인

귀하

첨부서류 1.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1부.

2. 작가경력서사본 1부.

3.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도면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 건축물 중 일부만 미술장식품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